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63호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 · 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하반기 (1차)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소부장	3월 16일	3월 30일 ~ 4월 15일	5월~6월	7월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 과제별 공고 참조

2. (중요)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으로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소재지와 공고 지역이 다를 경우 지원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 ·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주요 변경·개선 사항</th></tr>
<tr><th colspan="2">'25년도</th><th>'26년도</th></tr>
<tr><td colspan="2">사업구조 개편</td><td colspan="2"><table><tr><th>내역사업</th><th>내내역사업</th></tr><tr><td rowspan="4">수출지향형 (4년, 20억원)</td><td>해외진출</td></tr><tr><td>경쟁형</td></tr><tr><td>전략형</td></tr><tr><td>소부장</td></tr><tr><td rowspan="3">시장확대형 (3년, 36억원)</td><td>민간투자연계</td></tr><tr><td>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td></tr><tr><td>전략형</td></tr><tr><td rowspan="4">시장대응형 (2년, 5억원)</td><td>일반</td></tr><tr><td>융자연계형</td></tr><tr><td>소부장</td></tr><tr><td>구조혁신</td></tr></table></td><td><table><tr><th>내역사업</th><th colspan="2">내내역사업</th></tr><tr><td>글로벌선도 기술개발</td><td colspan="2">수출지향형 (2년, 10억원)</td></tr><tr><td></td><td colspan="2">글로벌협력형 (5년, 25억원)</td></tr><tr><td rowspan="5">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td><td rowspan="3">국가전략기술</td><td>도메인특화 AI (2년, 100억원)</td></tr><tr><td>AI후보물질 (2년, 10억원)</td></tr><tr><td>신약파이프라인 (3년, 30억원)</td></tr><tr><td colspan="2">구조혁신 (2년, 5억원)</td></tr><tr><td colspan="2">소부장 (2년, 5억원)</td></tr><tr><td colspan="2">일반(K-뷰티, 소셜벤처, 초격차) (2년, 5억원)</td></tr></table></td></tr>
<tr><td colspan="2">중점지원분야 (품목)</td><td colspan="2"><table><tr><th colspan="2">구분</th><th>분야 및 품목</th></tr><tr><td colspan="2">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td><td>124개 전략품목</td></tr><tr><td rowspan="4">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td><td>미래혁신 선도</td><td>9대 분야, 57개 품목</td></tr><tr><td>탄소중립이행</td><td>8대 분야, 47개 품목</td></tr><tr><td>성장동력 고도화</td><td>11대 분야, 60개 품목</td></tr><tr><td>新디지털 전환</td><td>11대 분야, 54개 품목</td></tr><tr><td colspan="2">소·부·장</td><td>9개 분야, 113개 품목</td></tr></table></td><td><table><tr><th>구분</th><th>분야 및 품목</th></tr><tr><td>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전략품목</td><td>124개 전략품목</td></tr><tr><td>중소기업전략 기술로드맵</td><td>13대 분야, 272개 품목</td></tr><tr><td>소재·부품·장비</td><td>9대 분야, 137개 품목</td></tr><tr><td>초혁신경제분야</td><td>3대 분야, 15개 품목</td></tr></table></td></tr>
<tr><td rowspan="4">기타사항</td><td>예외적용 (신청, 지원 제외사항)</td><td>• <신 설>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td><td>•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td></tr>
<tr><td>가점</td><td>•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 <신 설></td><td>•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td></tr>
<tr><td>사업신청 관련 서식</td><td>•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td><td>• <삭 제>
• <삭 제>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td></tr>
<tr><td>비목별 산정기준</td><td>•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신 설></td><td>• <좌 동>

•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도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td></tr>
</table>

3. `26년 지원내용(하반기 1차)

□ **(사업목적)** 소재·부품·장비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총 168**억원 내외 (140개 과제 내외)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분야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소부장)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지원자격)**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 **소부장** - (지원자격) 지역 소재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	붙임① ②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4월 15일(수),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1~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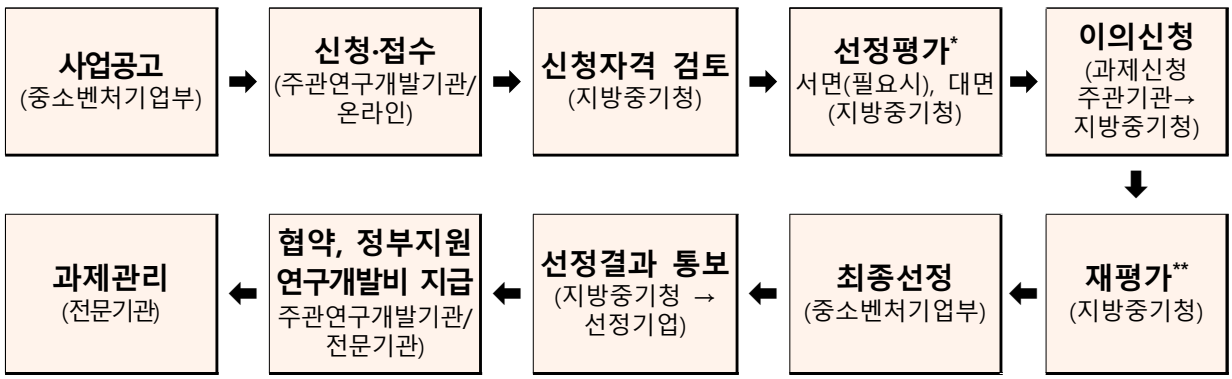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18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별첨] 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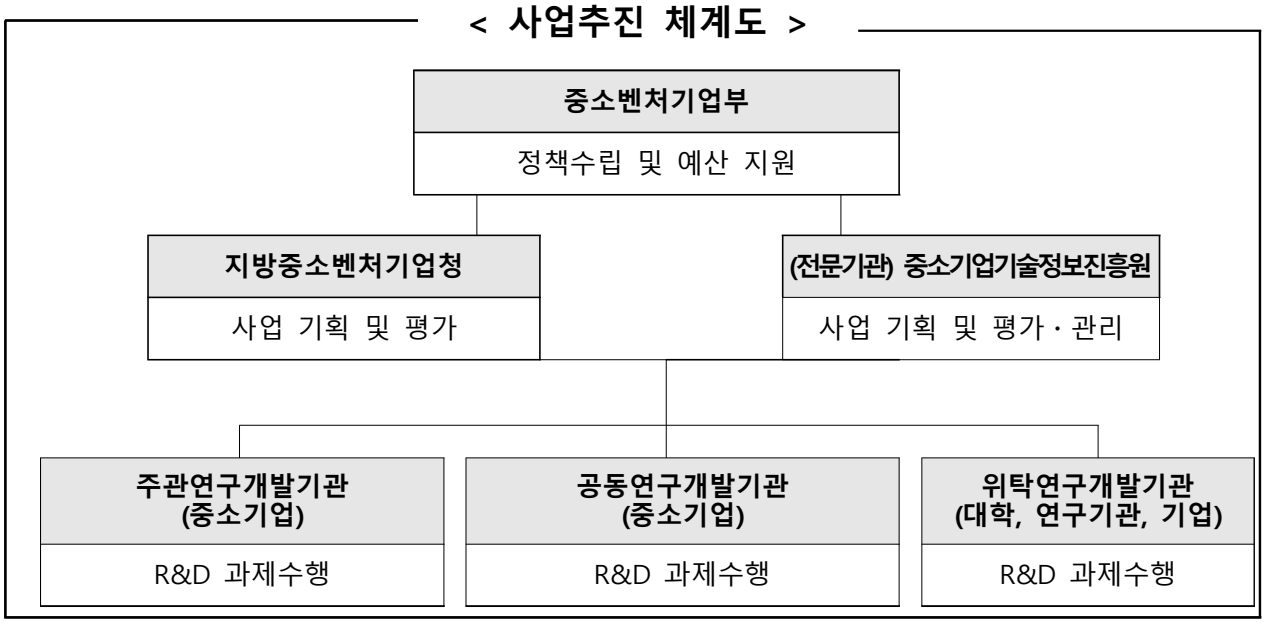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방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1~13]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